

제338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3. 13(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7
제출일자	2023. 2. 24.
회부일자	2023. 2. 28.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 가. 도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 나. 법령 개정으로 권한이 시장·군수로 변경된 사무의 삭제와 근거 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원 편익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 민원 편익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9개 신설 사무를 시장·군수로 위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신설 사무 1건 시장·군수 위임
- 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1, 5)
 - 「약사법」 개정에 따라 권한이 도지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장·군수로 변경된 4개 사무 삭제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권한이 시장·군수로 변

경된 1개 사무 삭제

-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로 변경된 사무 2건 삭제

다. 법령 불일치 조문, 조직개편 사항 등 정비(안 별표 1, 3, 5)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에 따른 소관부서 정비 6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지정된 사무 1건을 조례로 이관
-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설에 따른 해당 사무에 수임기관 추가
- 「약사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정 1건

4. 관련법령: 별첨

5.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2023. 1. 19. ~ 2023. 2. 8.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가. 예산관련: 별도 조치 필요없음

나. 규제심사: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평가 제외 대상

7.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도민 편익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10건과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7건의 삭제, 법령 불일치 조문 및 경상북도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한 9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목적과 적법성이 인정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

- 도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장·군수 위임사무 10건을 신설함(안 별표 1)
 - (환경정책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 동물원의 등록, 나. 동물원 등록의 취소, 다. 동물원의 휴·폐원 신고 수리, 라. 동물원 안전관리, 마, 동물원 운영·관리 기록 제출 요구, 바. 동물원 지도·점검, 사. 동물원에 대한 조치명령, 아. 동물원 등록 취소 관련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 9건의 신설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
 - (건축디자인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 4.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업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것을 신설
- 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로의 권한이 변경되는 5건을 삭제함(안 별표 1)
 - (식품의약과) 「약사법」 개정에 따라 “1.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2.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3.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증 갱신·재발급과 반납, 4. 약종상·한약종상·매약상의 허가증 교부와 허가대장 비치 영업소의 이전 허가”를 삭제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4. 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를 삭제함

-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법령 불일치 사항 등 6건을 정비함(안 별표 1)
 - (중소벤처기업과) “기업지원과”로 변경함
 -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민생과”로 변경,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대한 조정명령”은 삭제하고 에너지산업과의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대한 조정명령”으로 신설함
 - (아이세상지원과·여성가족행복과) “여성아동정책관·외국인공동체과”로 변경함
 - (식품의약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사무위임 규칙」에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물수마약류 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지정하고 이관함
- 소속기관장 위임사항과 관련, 소방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추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임과 관련한 부서 명칭 변경, 법령 불일치 사항 등 3건을 정비함(안 별표 3, 5)
 - (소방행정과) 별표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 소방행정과 부서신설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호봉확정 및 승급’ 사무에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추가함
 - (민생경제과) 별표5의 ‘대구경북경제자유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 부서명칭을 “민생경제과”에서 “에너지산업과”로 변경함
 - (식품의약과) 별표5의 ‘대구경북경제자유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라 ‘업무 개시명령 등’의 근거법령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을 “같은법 제70조”로 정비함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법령 개정
 따라 근거법령 2건을 삭제하고 시장·군수로 권한을 변경함(별표 5)
- (식품의약품) 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권한 중 “가. 의약품 판매
 업 허가, 변경허가, 나. 의약품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수리”를 삭제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1> 민원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2> 법령
 개정에 따른 시장·군수로 권한 변경 3>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서 「경
 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의 별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
 항(별표1), 직속기관장(소방본부)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5)의 각 해당 사
 무를 대상으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적시성과 민원 편익 증진이라는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대상 발굴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